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

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조홍용

전확 055-239-4650

보도자료 2024. 7. 8.(월)

허위 대출 등을 통해 180억원을 편취한 은행 직원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시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시경위, 수시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황보현희)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하여 허위 대출 등을 통해 약 180억원을 편취한 甲은행의 기업 대출 담당 직원 A를 특경법위반(사기)죄 등으로 7. 5.(금)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수사 결과, A는 '23. 7.경부터 '24. 5.경까지 약 10개월 간 <u>총</u>
 35회에 걸쳐 개인·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 하여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 으로 약 177억 7천만원을 편취하고,
 - '23. 7.경부터 '23. 9.경까지 甲은행의 **개인 대출고객 2명**에게 연락하여, "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"고 **속여 약 2억 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**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검찰과 경찰은 1개월 가량의 수사기간 동안 긴밀히 협력하여 ▲
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, ▲ 가상자산 투자 등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, ▲ 몰수보전·추징보전을 통해 합계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, 은행예금,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하였습니다.
-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향후 은행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.

I 피고인

O A(남, 34세, 甲은행 乙지점 기업대출 담당자)

Ⅱ 공소사실 요지

- '23. 7.경부터 '24. 5.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<u>피해자 甲은행</u>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명의자 1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'융자상담 및 신청서', '여신거래약정서'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甲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<u>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177억 7천만원을 송금받아</u> 편취 [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]
- '23. 7.경부터 '23. 9.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甲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<u>개인고객 2명(피해자)</u>에게 연락하여 "남아 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"라고 속여 합계 2억 2천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[사기]

Ⅲ 수사경과

- '24. 6. 10. A, 김해서부서에 자수 및 **긴급체포**※ 甲 은행은 긴급체포 다음 날인 '24. 6. 11. 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
- O '24.6.12. 창원지법, A 구속영장 발부
- O ~'24.6.18. 김해서부서, A 및 乙지점 직원 등 조사, 계좌추적 등 실시
- O '24. 6. 19. 김해서부서, A 구속송치(창원지검)
- ~'24.7.4. 창원지검, A 조사, A가 대출금을 입금받은 지인들 계좌· 피해자들 계좌 분석, 몰수·추징보전 완료(사경 신청)
- O '24.7.5. A 구속 기소

IV

수사 결과

은행 직원이 고객 명의로 거액의 허위 대출을 일으켜 은행 자금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습니다.

- 피고인은 '23. 1.경부터 甲은행 乙지점의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토대로,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하여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.
-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① 결재권자 부재시 관행적으로 <u>실무 담당자가 시급한</u>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, ②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 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, 이와 관련하여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·감독이 미흡했던 사실이 각각 확인되었습니다.

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.

- 피고인은 <u>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본건 범행을 계획</u> 하였고, 실제로 편취한 약 180억원의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소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
- 구체적으로, 검찰과 경찰의 면밀한 계좌추적을 통해, 피고인이 ▲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, ▲본건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 하는 데 약 27억원, ▲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,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검·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가범행을 밝혀내고,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였습니다.

- 본건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여 긴급체포되면서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, 검·경은 구체적 범행 규모와 범행 방법 규명, 피해재산의 추적 등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.
- 검찰은 ▲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여 A가 주거지에 은닉한 현금 약 1억 8천만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▲영장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위조 대출서류의 종류·위조 부분 등 특정 뿐 아니라 편취금의 사용처 확인 등과 관련된 증거서류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- 위와 같은 검·경 협업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피고인의 약 4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몰수·추정보전을 신속히 청구하였고, 이를 통해 ▲피고인의 <u>가상자산 계정 등에 남아 있던 예치금,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,</u> ▲예금채권 및 ▲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모두 동결하였습니다.

V 향후 계획

● 창원지검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황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및